

# 定 款

學校法人 海青學園

2026.02.05

# 학교법인 해청학원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7.17 개정)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해청학원(海靑學園) (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동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42 (청담동)에 둔다.  
(2015.08.27. 개정)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며, 이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 장 자산과 회계

###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대장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2013.07.17 개정)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5.08.07. 개정)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당해 학교의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2023.02.09. 개정)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11조의2 (예산·결산의 보고와 공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고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학교 홈페이지”라 한다.)에 1년간 공개한다. (08.02.15 신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 제 3 장 기 관

### 제 1 절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 사 : 7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08.02.15 개정)

감 사 :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08.02.15 개정)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이사장 및 개방이사를 포함한다.) (08.02.15 개정)

2. 감사 2년(추천감사를 포함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 중 2인(개방이사)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에서 선임하고, 감사 중 1인(추천감사)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  
한다.(08.02.15 신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전에 관할  
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임원 인적사항은 홈페이지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2013.07.17 신설)

**제15조의 2 (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  
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또는  
추천감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08.02.15 신설)

② 법인은 개방이사 또는 추천감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추천을 요청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

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 제15조의 3 (추천위원회)

- ①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추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08.02.15 신설)
-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하는자 : 3인
  2. 이사회에서 추천 하는자: 2인
-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수 있다.

### 제16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이사 정수의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08.02.15 개정)
- ③ 이사정수의 1/3이상은 교육에 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08.02.15 개정)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2026. 02. 05. 개정)
-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가 단수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2023.02.09. 신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 제17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하며, 관할청에 보고 한다.(2013.07.17 개정)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장을 겸하지 못한다.

### 제18조 (이사장및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9조 (이사장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 보고하는 일(2026. 02. 05. 개정)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제 2 절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와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 (2015.08.27.신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와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와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3.07.17 개정)

**제24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24조의 2(설립자 등과의 거래 제한)** (2013.05.24 신설)

이 법인은 원칙적으로 설립자, 출연자, 전·현직 이사장 및 각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의무를 부담하거나 금전 또는 재산의 처분을 수반하는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거래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확인하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 독립적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이사회에 제출될 것.
2. 해당 거래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확인하는 감사의 의견이 이사회에 제출될 것.
3.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승인 결의가 있을 것.

**제25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09.30 개정)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의 2 (변호사 참석 공증) (2015.02.12 개정)**

① 이사회의 개최 및 의사 진행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장은 이 법인의 이사회에는 공증담당 변호사를 참석·확인하게 한 후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한다.

② (2015.02.12. 삭제)

## 제 4 장 수익사업

**제27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조림

**제28조(수익사업체의 명칭과 주소)**

수익사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해청학원수익사업부(건설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4(삼성동)

2. 해청학원수익사업부(서린빌딩)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48(길동)

(2025.08.07. 개정)

**제29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2025.08.07. 삭제)

**제30조 (관리인)** ① 제28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 5 장 해 산

**제31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7.17 개정)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2013.07.17 개정)

**제33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2025.08.07. 개정)

## 제 6 장 교 직 원

### 제 1 절 교 원

#### 제 1 관 임 명

**제34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026. 02. 05. 개정)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정규교원 이외의 계약직 교원에 대한 임용권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2002.6.4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교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마감일 1월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학교홈페이지,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08.02.15 신설)

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자로 제한 할수 있다.(08.02.15 신설)

⑥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는 학교의 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교사자격증 가진 자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2019.10.17. 신설)

⑦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2019.10.17. 신설)

**제34조의 2 (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99.1.1.개정)

**제34조의 3 (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08.02.15 신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08.02.15 신설)

**제34조의 4(의원면직의 제한)**사립학교법 제61조의 2를 준용한다.(2026.02.05. 개정)

**제35조 (정년)**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제35조의 2 (특별승진)**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4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95.10.31.신설)

## 제 2 관 신분보장

**제36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2017.02.16. 개정)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2015.08.27. 개정)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2015.02.12. 개정,2018.11.01. 개정)
- 7 의 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2017.02.16. 신설)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99.1.1.신설)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된 때 (99.1.1.신설)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때(2018.11.01. 신설)

**제37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2018.11.01. 개정)

2. 제36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때 까지로 한다.

3.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3.02.09. 개정)

5. 제3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수 있다.(2021.09.30. 개정)

6의 2. 제36조 제7호 2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2018.11.01. 신설)

7. 제3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8. 제3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9.1.1.신설)

9. 제36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99.1.1신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6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 한다.(2018.11.01. 신설)

**제38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6조의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9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6조 제1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2018.11.01. 개정)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제3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2018.11.01. 개정)

③ 제36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99.1.1개정)

④ 제3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5.08.27. 개정)

**제40조 (직위 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수 있다(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2026.02.05. 개정)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수 있다.(2026.02.05. 개정)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자(2026.02.05.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3호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2021.09.30. 개정)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1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관련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한다.

**제42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 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42조의 2 (명예퇴직 수당)** ① 교원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자는 교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99.1.1.개정)

③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수당의 지급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수당지급 공고 : 임명권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수당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수당지급 신청기간, 수당지급 방법, 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도 개시일 30일 전 까지 이를 공고한다.

2. 지급, 심사결정 : 임명권자는 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3. 지급 대상자 통지 :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학교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 수당지급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2조의 4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2조의 5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08.02.15 신설)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08.02.15 신설)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의 6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2조의 7(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의 8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의 9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42조의 10 (인사위원회의 감사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감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42조의 11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43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62조행」 제62조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10을 준용한다.  
(2026.02.05. 개정)

### 제44조 삭 제

**제45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2026.02.05.개정)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 제24조의 10를 준용한다.(2026.02.05. 개정)

**제47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2026.02.05. 개정)

**제47조의 2 (위원의 기피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7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2026.02.05. 개정)

**제48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2026.02.05. 개정)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9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 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2026.02.05. 개정)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을 이사장에게 위임한 다.(2026.02.05. 개정)

④ 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0조 (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 하여야 한다.

**제50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의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 4를 준용한다.  
(2025.08.07. 개정)

**제5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52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 3 절 재심위원회

## 제 4 절 사무직원

**제67조 (자격)**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025.08.07. 개정)

1. ~ 10. 삭제 (2025.08.07. 개정)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09.30. 삭제)

**제68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대우직원 선발, 명예퇴직, 공로연수를 말하며, 임용권자는 공개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3.02.0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 68조의 1 (대우직원선발)** 이사장은 학교소속사무직원중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를 대우직원으로 선발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2001.6.7. 신설)

**제 68조의 2 (근속승진)** 이사장은 학교소속 사무직원중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중 근속 승진 임용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2001.6.7. 신설)

**제69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2013.07.17 개정)

**제70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

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2013.07.17 개정)

**제71조의 2(명예퇴직)** ①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의 3(명예퇴직수당)** ①제71조의 2 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상위계급자
2. 우리학원 근무경력이 많은자
3.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많은자
4. 당해 계급 장기재직 자

② 명예퇴직수당이 지급액, 지급절차등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립학교의 사무직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교육감이 정하는바에 의할수 있다.

**제72조 (징계 및 재심 청구)** ① 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 5, 제70조의6, 제70조의 7을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의 재심 위원회를 두어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의 2 (행동강령의 목적)**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5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 및 학교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8.07. 신설)

## 제 7 장 직 제

### 제 1 절 법 인

### 제72조의 3 (향응·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적 이익, 접대·향응, 편의,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학교법인 또는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학교법인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③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이사장 또는 학교장이 임원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원 및 교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원 및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원 및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원 및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임원 및 교직원에게 또는 그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2025.08.07. 신설)

**제72조의 4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08.07. 신설)

**제72조의 5 (사적 이해관계 신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사장(또는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72조의 6 (위반행위 신고 및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임원 및 교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이사장(또는 학교장)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원 및 교직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5.08.07. 신설)

**제72조의 7 (교육)** 이사장은 임원 및 교직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2025.08.07. 신설)

**제72조의 8(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에는 임원(감사 등), 소속 학교에는 교감(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2.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3. 그 밖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025.08.07. 신설)

**제72조의 9(세부사항의 위임)**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5 및 정관에 따라 행동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적인 행동강령 규정을 제정한다.

(2025.08.07. 신설)

**제73조 (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참사로 보한다.

② 법인 사무과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 임원 및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

우

6.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법인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2025.08.07. 신설)

## 제 2 절 고등학교

**제74조 (교장등)** ① 영동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두며, 학교운영상 필요할 경우 교감 1인을 증치할 수 있다.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2025.08.07. 개정)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감 1명을 증치할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2003.08.28.변경)

제1교감 : 1.2학년 교무 및 생활지도 업무

제2교감 : 3 학년 교무 및 생활지도 업무

⑤ 학교장 유고시는 제1교감, 제2교감으로 학교장 직무를 대행한다.(2003.08.28.변경)

**제75조 (하부조직)** 영동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사무관)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 3 절 정 원

**제76조 (정원)** 법인 및 고등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2 2021.02.25.개정)

##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77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동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013.07.17 신설)

**제7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25.08.07. 개정)

1. 학교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수련활동(학생야영수련 활동을 포함한다)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2025.08.07. 개정)
9. 학교시설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모니터링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025.08.07. 신설)
10.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025.08.07. 개정)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⑥ 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⑦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7.17 신설)

### 제79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2013.07.17 신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추천한 자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94조 제1항의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2013.07.17 신설)

**제80조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1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2013.07.17 신설)

**제82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84조 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 결정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2013.07.17 신설)

**제8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013.07.17 신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4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2013.07.17 신설)

**제85조 (회의 및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

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 할수 없다.

④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2013.07.17 신설)

**제86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2013.07.17 신설)

② 안건심의 또는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7조 (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78조 제1항 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②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2013.07.17 신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13.07.17 개정)

**제89조 (시행 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78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026.02.05. 개정)

**제90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91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92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를 적용한다.(2013.07.17 신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94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회(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2013.07.17 신설)  
② 제1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5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2013.07.17 신설)

**제9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2013.07.17 신설)

**제97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3.07.17 신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8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2013.07.17 신설)

② 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 (자문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2013.07.17 신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3조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 (간사)**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2013.07.17 신설)

**제101조 (이사회의 지원)** 학교법인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2013.07.17 신설)

## 제 9 장 학교교육분쟁 조정 위원회

제102조 내지 제 113조 < 삭제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법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회의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제3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6월 7일 부터 시행한다.

## 제 10 장 보 칙

제114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한국일보에 공고한다.

제11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16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부 칙(행정 1042. 1-998)

이 정관은 197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관리 1042. 3- )

이 정관은 197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관리 1040-6386 )

이 정관은 197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관리 1042. 3-428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일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결격사유 해당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김형목	1912. 6. 3	4년	서울 종로구 내수동 110-15
이 사	한격만	1899. 7. 5	·	서울 종로구 청운동 89
	· 김계숙	1905. 2. 9	·	서울 종로구 청운동 15-6
	· 이기을	1923.10. 4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44-23
	· 고림현	1922. 3.17	2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4
	· 정정국	1919. 4.17	·	서울 성북구 정능동 713-32
	· 이안섭	1920.10.30	·	서울 성북구 정능3동 715-13
	감 사	김시대	1923. 6. 4	·
· 윤도한		1929.10.24	1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211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2의 각 직급

에 임용된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 칙(관리 1042-5944 )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9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과 유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 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⑤ (일반직원의 직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직급에 임명된 자는 이 정관 시행당시 직급에 불구하고 그 직급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관리 104x3-1719)

이 정관은 198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관리 25422-22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5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의 특별임용) 본 정관 시행일 이전부터 재직중인 자의 기능직 특별 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에 준하여 특별 임용하며 특별임용 방법은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된 정원에 불구하고 현재 재직중인 고용원이 기능직 으로 임명될 때까지 기능직 정원(수)을 고용원 정원(수)으로 한다.

## 부 칙(행정 25422-891)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근무하는 교원(학교의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부 칙(행정 81422-1092)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5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행정 81422-1580)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8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행정 81800-1037)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6월 7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행정 81422-1251)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4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3조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 (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원 선임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6조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 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0 명
일반 직 계	3 명
5 급 (부 참 사)	1 명
6 급 (주 사)	1 명
9 급 (부 서 기)	1 명
기능 직 계	7 명
10 등 급 계	7 명
운 전 기 사 보	1 명
목 공 기 사 보	1 명
건 축 기 사 보	1 명
전 기 기 사 보	1 명
수 도 기 사 보	1 명
고 용 원	2 명

<별표 2>

## 학교 사무직원 정원

(2021.02.25개정)

직급	구분	정원
총 계		7 명
일반직 계		7 명
5급 (사무관)		1 명
6급 (주사)		0 명
7급 (주사보)		2 명
8급 (서기)		0 명
9급 (서기보)		4 명 (가산인원 1명 포함)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정년 잔여 기간	산 정 기 준
①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정년잔여월수
② 5년 초과  10년 이내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left( 60 + \frac{\text{정년 잔여월수} - 60\text{월}}{2} \right)$
③ 10년 초과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자의 금액과 동일한금액 (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